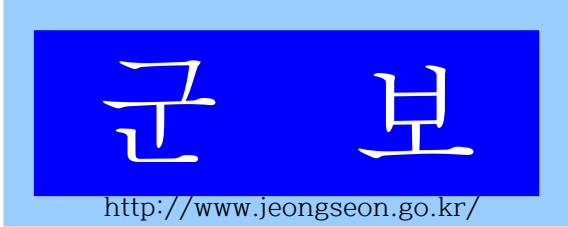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7호 2024. 4. 3.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348호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4-354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4-367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4-368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22
- 정선군 공고 제2024-393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44
- 정선군 공고 제2024-397호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4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348호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정선군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지도 및 감독,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4. 입법예고 : 2024. 3. 22. ~ 2024. 4. 11.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977), 팩스(033-560-2141)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선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26-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정선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7.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2. 1.]

□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 1. 시설의 장
 - 2. 시설 거주자 대표
 -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위탁을 통한 가족센터 사업운영

나. 관련 조문 : 제6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추계방법 : 2024년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사업 기준으로 작성

- ▶ 가족센터 운영 : 3,803,850천원
- ▶ 다문화 특화사업 운영 : 1,036,320천원
-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567,120천원
-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 12,280천원
- ▶ 다문화 한글한습지 지원 : 25,080천원
- ▶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 9,500천원
- ▶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 12,000천원
- ▶ 세계요리대회 운영 : 100,000천원
- ▶ 함께키움 공동육아 운영 : 100,000천원
- ▶ 1:1 방문한국어교육 운영 : 231,500천원
- ▶ 국제특급우편 요금지원사업 : 100,000천원
- ▶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운영 : 25,000천원
- ▶ 가족이 행복한 도시 정선만들기 운영 : 125,000천원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2,163,560천원
-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 107,400천원
- ▶ 아이돌봄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 : 375,000천원
- ▶ 영아 아이돌보미 수당지원 : 125,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 2024년 ~ 2028년까지 약8,918,610천원 지출예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출	국비	756,517	756,517	756,517	756,517	756,517	3,782,585
	도비	141,350	141,350	141,350	141,350	141,350	706,750
	군비	885,855	885,855	885,855	885,855	885,855	4,429,275
	소계(a)	1,783,722	1,783,722	1,783,722	1,783,722	1,783,722	8,918,610
세입	국비	756,517	756,517	756,517	756,517	756,517	3,782,585
	도비	141,350	141,350	141,350	141,350	141,350	706,750
	군비	885,855	885,855	885,855	885,855	885,855	4,429,275
	소계(b)	1,783,722	1,783,722	1,783,722	1,783,722	1,783,722	8,918,610

4. 작성자

가족행복과장 김 덕 기

정선군 공고 제2024-354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 2024- 10호(2024. 2. 2.)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 2)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4	□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 건축면적 : 2,152.21㎡ - 연 면 적 : 6,087.08㎡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3. 29. ~ 4. 12.)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및 중내용
1	고한읍 고한리	120-5	주차장	2,894	2,34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2	고한읍 고한리	120-23	대	867	34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3	고한읍 고한리	120-48	주차장	97	97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4	고한읍 고한리	121-19	대	1,969	1,213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5	고한읍 고한리	124-9	전	119	11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6	고한읍 고한리	산1-93	임야	191	155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계				6,137	4,282					

정선군 공고 제2024-367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합성 도모및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자치법규의 기능을 강화하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자 함.

2. 법적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원칙 신설(안 제19조제5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 033 - 560 - 2364
- F A X : 033 - 562 - 6400
- e-mail : akfn3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을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을 “영 제14조의5”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생략)</p> <p>②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u>」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군수는 <u>특별교통수단</u>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u>정선군과 인접한 시·군</u></p> <p>② (생략)</p>	<p>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u>특별교통수단</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u>」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p>	<p>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영 제14조의 5 ----- ----- -----.</p>

다.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정선군 공고 제2024-368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6조(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사적 이해관계신고서 등 별지 제3·4·5·6·7·8·9·14호 서식 삭제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 정비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인

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

○ 전 화 : 033 - 560 - 2221

○ F A X : 033 - 560 - 2592

○ E-mail : keh8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 를 “전가(轉嫁)”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하기관” 을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전단 중 “서면” 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담당관 서 건 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p> <p><u>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u>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u></p> <p>6. <u>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가.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나.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다.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u></p>	

현 행	개 정 안
<p><u>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u></p> <p>7. <u>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u>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직무관련자가 되기 전 발생한 금전거래가 직무관련자가 된 후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나. <u>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u></p> <p>다.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라.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 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본호신설 2019.6.26]</u></p> <p>② <u>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u></p>	

현 행	개 정 안
<p><u>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사유 소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u></p>	

현 행	개 정 안
<p><u>받은 군수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u> <u>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u> <u>3. 직무 재배정</u> <u>4. 전보</u> <p><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u> <u>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u> <p><u>⑦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 현</u></p>	

현 행	개 정 안
<p><u>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6조(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u> <u>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u> <p><u>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p> <p>2. <u>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p> <p>3. <u>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4. <u>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5. <u>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u></p> <p>② <u>군수는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u></p>	

현 행	개 정 안
<p><u>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u></p> <p><u>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u>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u></p> <p><u>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u></p> <p><u>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u></p>	<p><u><삭 제></u></p>
<p><u>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u> <u>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u> <u>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u> <u>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u> <p><u>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건설중기·부</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u></p> <p>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2. (생략)</p> <p>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u>전가</u>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p> <p>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u>산하기관</u>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p>	<p>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u>전가(轉嫁)</u> ----- ----- -----</p> <p>4. ----- ----- <u>산하기관</u>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p>

현 행	개 정 안
<p>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p>	<p>「<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5. (생략)</p> <p>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u> <u>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u>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u>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u></p> <p><u>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u></p> <p><u>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u></p>	

현 행	개 정 안
<p><u>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u></p> <p><u>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4-393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정 선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7호선(사북~직전)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차량	구간	사북읍 사북리 338-2 ~ 사북리 521
기간	2024년 3월 29일부터 ~ 별도 통지(시설물 보수 완료시 까지)		
이유	군도7호선(사북~직전) 직전터널 출입구 구조물 보수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산아리관광~황금 아로마 찻길방~우신주차장~꿈의 궁전~산마루축산~사북교차로 ~사읍1교~사북교회		

정선군 공고 제2024-397호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군정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인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나. 민간인의 군정 참여 촉진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비 보상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실비보상의 적용 (안 제2조)
 -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 나. 실비보상의 적용대상 (안 제3조)
 -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
 -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 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다. 실비보상의 내용 및 지급기준 (안 제4조 ~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함
 -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함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총무행정관)
- 전 화: 033-560-2232
- 팩 스: 033-560-2590
- 이 메 일: yul1206@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
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3. 정선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4.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